

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4. 10. 22
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4. 10. 14
- 다. 회부일자 : 94. 10. 17
- 라. 상정일자 : 94. 10. 22

2. 제안설명 요지(설명자 : 도시개발과장 박홍우)

가. 제안사유

- 구 단위 도시계획업무의 자치기능을 강화
- 일정범위의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등에 대한 현장 및 책임행정을 동시 구현
- 신속한 도시계획업무수행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기대심리에 부응함은 물론 민원해소
- 자치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

나. 주요골자

- 기능(안 제2조)
 -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 -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
 -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
 -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
- 구성과 임기(안 제3조, 제4조)
 - 위원수 :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

- 위원구성 : 위원장 - 구청장, 부위원장 - 부구청장
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-전체 위원의 1/3이하(5명), 도시국장은 당연직
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-전체위원의 2/3이상(12명)
- 임기 : 2년(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은 제외)
 ※ 소위원회-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(위원장은 호선)
- 운영-비공개 회의개최(안 제6조, 제9조, 제11조)
 - 의결정족수 : 개회-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,
 의결-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 - 수 당 : [대구직할시 달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]에 의거 지급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병훈)

-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입안, 결정 및 집행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의 제정목적에 부합됨.
- 금번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중 우리 자치구에 이관되는 사무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 종전 6개사무에서 28개사무로 22개사무가 확대되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범위는 종전 15개사무에서 28개사무로 13개사무가 확대되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권도 27개사무가 신설되는 등 도시계획기능이 대폭적으로 우리 구에 이관되게 됨.
- 이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자치권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기대되며
- 또한 본 조례안이 주민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첨부 : 조례(안) 1부